

「2026년 진주형 창업사관학교 육성 지원사업」모집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기술고도화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지역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2026년 진주형 창업사관학교 육성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3월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진주형 창업사관학교 육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2027. 2. ※ 선정기업 협약기간 별도
- 지원대상
 - (진주소재) 업력 5년 미만의 진주 소재 창업기업
 - (지역유입) 업력 5년 미만의 전국 단위 창업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주소지 진주이전 가능 기업
- ※ 신청일 기준 진주시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수행중인 기업 제외
- 지원내용
 - 기업당 3천만원 기술고도화지원금 지원
 - 집중 액셀러레이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후속 투자유치 및 우수기업 경남창경센터 TIPS연계 지원 등
- 선정규모 : 총 9개사(관내 7개사, 관외 2개사)
 - ※ 관내-외 적합기업 미달 시 기준 T.O. 변동 선정 가능

2 사업절차



※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사업내용

1. 기업 발굴 및 선정

□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신청일 기준, 창업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미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지원가능
- 신청기업은 신청일 기준 소재지의 제한은 없음
- 단, 최종선정 기업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진주 내 **본점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함
※주소지 이전 불이행 시 협약 해지 및 선정취소, 후순위 기업 선정
-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모집규모 : 9개사(관내 7개사, 관외 2개사)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진주시 유관기관 사업화 자금 선정 기업 제외
※ 본 사업 선정 후 타기관 지원사업 중복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등 준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No.	대상 업종	분류코드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 신청 및 선정개요

○ 신청기한 : 2026. 3. 5.(목) ~ 3. 20.(금), 23:59까지

○ 신청방법 : 경남창업포털 온라인 신청(<https://www.gnstartup.kr>)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건수에 따라 모집기간 연장 될 수 있음

※ 각 단계별 심사결과는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선정기준 : 각 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구 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 점
조직역량 (20)	내부 보유역량	인적·물적 인프라의 우수성, 조직구성 현황(계획)의 적절성	10
	외부 협력 파트너	외부 협력 파트너 보유현황 및 역량, 연계·협업 전략	10
사업성 (30)	목표시장	목표시장의 명확한 정의, 해당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10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및 가능성, 사업 로드맵의 구체성·타당성	10
	기술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기술구현의 현실성	10
경쟁력 (30)	경쟁우위 요소	경쟁사 대비 경쟁우위 요소 및 차별성·독창성	10
	경쟁력 확보방안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유지방안 및 계획의 구체성	10
	고도화 전략	창업아이템 및 기업역량 고도화 전략의 구체성	10
투자유치 가능성 (20)	소요자금 회수 가능성	제휴(전략적 투자, M&A), IPO 등을 통한 회수 가능성	10
	성장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의 스케일업 및 사회적 가치실현 가능성	10
총 점			100

<진주형 창업사관학교 육성 지원사업 평가표>

○ 현장실사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해 현장 심사를 실시

○ 제출서류

구 분	목 록	
필 수	[양식다운]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발급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대표자)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대표자)	
	국세 완납증명서(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본 각 1부	
해 당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수출실적, 국내외 인증, 수상실적 등 기타 실적자료	

○ 문의처 :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실(yehi0807@ccei.kr/055-291-9386, 9305)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최종선정 :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 최종 확정 및 개별 연락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6. 12월까지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 가능

- 가. 공고에 명시 된 기한 내 본점 또는 지점 주소지를 진주로 이전 불이행
-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 다. 부도·폐업·회생·파산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 라.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
-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2. 지원내용

제품화 검증(CORN 2단계) ※ 희망기업에 한하여 진행 예정

- 교육목적 : 프로젝트계획 수립 방법론 실습
- 교육일자 : 2026. 5 ~ 6 중
- 교육장소 : 진주창업지원센터 2층
- 교육내용 : 지원대상 팀들이 직접 프로젝트 수행계획 수립하고 진행사항에 대해 전담인력이 점검 및 확인

구분	소요 시간	수행 단계	세부내용	내 용
STEP 1	2시간	고객가치 제안	-영상교육 -고객프로필 및 가치맵 작성 (고객가치제안 캔버스) -체크	- 고객활동과 고객이 느끼는 문제(불편함)를 이해하고 창업아이디어가 고객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고객가치(해결책)를 주는지 구조화된 캔버스로 작성하면서 분석
STEP 2	2시간	WBS 작성	-과업목표 설정 -과업분류표(WBS) 작성 -체크	- 시간과 자금,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3개월간 수행할 목표(시제품 개발 등)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체 과업을 찾아보고 분해하는 WBS(Work Breakdown Structure)과정을 수행
STEP 3	2시간	프로젝트 계획수립	-프로젝트 전체 범위 정의 -프로젝트 업무세분화 및 구조화 -체크	- 3개월간의 프로젝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전체 과업을 세분화시키고 구조화 하면서 목표 기한, 예산, 인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계획 수립
STEP 4 (별도 수행)	5개월 (반복)	MVP 제작	-최소기능제품(MVP) 개발 -발표/멘토링 -프로젝트 수행 진척관리	- 아이디어를 작동이 가능한 최소한의 핵심 기능만을 탑재한 제품(서비스)으로 만들어 실제 고객반응을 검증과정을 통해 개선

투자유치 역량강화(CORN 3단계)※ 희망기업에 한하여 진행 예정

- 교육목적 : 고객 및 제품개발 산출물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성공률 제고
- 교육일자 : 2026. 7.~ 8 중
- 교육장소 : 진주창업지원센터 2층
- 교육내용
 - (이론교육) 투자유치 가이드 및 IR 피칭자료 구성요소의 이해
 - (실습교육) IR 피칭자료 작성
 - (발표 및 멘토링) IR 발표 및 AC의 멘토링

구분	세부내용	내 용
STEP 1 투자유치 교육	- 투자유치의 이해 영상 시청 - 에어비앤비 IR 자료 분석	- 고객에게 어떤가치를 주는 제품/서비스이며, 팀원과 어떻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유치의 이해도 향상 및 IR 자료 벤치마킹
STEP 2 IR자료 작성	- IR자료 작성 및 검토	- 아이디어 및 제품화 검증 후 사업화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사항들을 명확화하면서 IR 자료 작성
STEP 3 IR 발표 및 멘토링	- IR 발표 - 투자자 입장에서의 멘토링	- 사업계획을 투자자 및 청중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발표하기 위한 자료작성 및 발표요령 학습

입주공간

- 지원목적 : 관외 기업의 관내 소재지 마련 및 입주보육을 통한 기업관리
- 지원대상 : 선정기업 중 입주공간 신청기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 입주신청 및 기업규모에 따른 입주공간 지원(개방형 제공)
 ※ 단, 입주공간 현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기술고도화 지원금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 지원규모 : 기업당 3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제품개발, 마케팅, 컨설팅, 재료구입, 인건비 등 지원

< 지원항목 >

비목	비목 정의
인건비	협약기간 내 신규채용 인력에 한해 지원(협약기간 내 최대 9백만원)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임차하는 비용 ※구입 불가
무형자산 취득비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한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국내·외 박람회 참가(부스임차비), 해외항공비(기타 출장여비 제외) 등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세무기장대행 수수료 등
전문가활용비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기업경영을 위한 자문비 등
기타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 맞춤형 지원(단, 지원가능 여부 검토 후 지원)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고도화 ※ 기업당 200만원 상당

- 지원기간 : 2026. 6. ~ 2026. 10.
- 지원내용 :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주요내용 :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고도와 지원
(홍보영상·브로셔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등)

□ 최종성과보고회

○ 행사기간 : 2027. 1 ~2월 중

○ 주요내용 : 주요성과 공유 및 최종평가, 네트워킹

· 성과공유 : 팀별 사업 추진 주요 성과 발표, 네트워킹 등

· 최종평가 : 팀별 우수·적합·보류 평가 등급 선정*

* 평가 기준(100점) : 수행률(40점), 집행률(20점), 참여도(20점), 발전 가능성(20점)

점수	등급	내 용	비 고
80 ~ 100점	우수	·사업계획서의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성장 가능성 높음	
60 ~ 79점	적합	·사업계획서의 목표 대비 추진실적은 맞추었으나 향후 사업성장 가능성 보통	
0 ~ 59점	보류	·과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이행 또는 협약기간 내 필수항목* 불이행 등) *교육, 컨설팅, 최종성과평가 등	사업비 전액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1년

4 유의사항

- 본 사업 선정기업은 진주시 및 진주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3회 이상 필수 참석해야함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가 발생하면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고 추가로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및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등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부적절한 예산 사용(거래처, 예산 범위 초과 사용 등)은 환수할 수 있음
- 협약 종료 후,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최종평가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음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진주시 내 본점 주소지 등록 완료 및 협약기간 내 액셀러레이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최종성과보고회 등 지원사업 내 구성 프로그램 필수 이행 하여야 함. 미이행 시 협약취소 및 사업비 환수, 추후 진주시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붙임 : 1.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사업수행확약서 각 1부. 끝.

